

기념물 제127호 안산읍성 및 관아지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산26-4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

범례

- 문화재 보호구역
- 영향검토구역 (100m간격)

구분	허용기준 (범위)	
	평사라브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 현상보존, 신축시 도심의 대상임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축·보수 허용	
2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3층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 (5층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20M 이하 (5층 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한다.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예 :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을 적용) - 보호구역으로부터 변경 100M이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도심의대상이다.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SCALE

